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 동향 및 국내 인증 현황

정 수 열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 인정팀장

1972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는 113개국의 350여 NGO(민간단체)에서 1,000명이상의 각국 전문가가 모여 「인간과 환경」이라는 이슈를 갖고 「유엔인간환경회의」를 통하여 환경에 대한 최초의 국제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 의하여 환경을 위한 전 세계적인 행동계획이 채택되었으며, UNEP(The United Nations Program)가 창설되었다. 이 회의는 인구의 급증, 도시화 및 산업화에 따른 인간사회의 편의가 한편으로는 인간이 생존해 나가야 하는 지구를 황폐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적인 문제로 부각시키는 최초의 동기로 작용을 하게 되었으며, 이는 「New Paradigm」 혹은 「Dual Track」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실제적인 국가간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한 바젤협약과 CFC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몬트리올의정서 등의 국제협약이 체결되었으며, 1991년에는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논의가 UN을 중심으로 실시되었고,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UNCED(지구 Summit회의)에서는 「환경」오염의 주체인 기업의 역할을 부각시키는 의미에서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위한 「그린라운드」라는 명제를 이끌어 내게 되었다.

환경경영체제(ISO 14001)에 대한 국제규격의 탄생배경을 보면 ICC(국제상공회의소)에서 1991년 4월 ISO/IEC에 산업계의 환경경영을 표준화 하기 위한 작업을 요청하여 국가별로 상이한 환경관련 규격으로 인한 무역분쟁을 해소하고 산업계의 낭비적인 비용지출을 최소화하며 환경보전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였다. 이에 ISO/IEC는 SAGE(환경전략자문그룹)을 설치하고, 1993년 6월 환경경영체제 국제표준의 제정을 담당할 ISO/TC 207을 창립하였다. ISO/TC 207에서는 3년여의 규격 제정작업을 통하여 1996년 9월 환경경영체제 국제규격인 ISO 14001을 제정 공표하였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환경경영체제의 국제표준화에 대비하여 지난 1994년부터 2차례의 시범인증제도(PILOT PROPRAM)를 운영하여 52개 기업에 대하여 환경경영체제 인증을 실시하였으며, 1997년 8월 현재 인정기관인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KAB)로부터 지정받은 5개의 인증기관으로부터 전기·전자, 화학 및 건설업종을 중심으로 84개의 기업이 인증을 획득하였고, 외국인증기관으로부터 약 80여개의 기업이 인증을 획득하여 환경경영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환경에 대한 인식이 일찍이 논의되어 왔던 유럽지역에서는 영국을 중심으로 환경경영체제 인증규격인 BS 7750이 이미 1993년 2월에 제정 공표되어 시범인증제도가 운영이 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1994년 1월 BS 7750이 보다 현실적으로 개정되어 유럽전역으로 확산되었다.

또한 이와 동시에 EU에서는 EMAS(Eco-Audit Management Regulation)를 제안하여 1993년 3월

과 1993년 6월에 각각 채택 및 제정·공표하였고 많은 유럽국가에서 EMAS의 인증이 시행되었다.

ISO 14001이 제정·공표되기전까지 유럽에서는 EMAS와 BS 7750에 의한 1,000건 이상의 인증이 이루어 졌으며, ISO 14001이 정식으로 국제규격으로 채택된 1996년 10월이후부터는 ISO 14001에 의한 인증이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도 전기 및 기계분야를 중심으로 330여개의 기업이 인증을 획득한 상태다. 북미 및 남미의 경우는 인증획득 실적에서는 유럽이나 동아시아보다는 저조하지만 현재 많은 기업이 환경경영체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고 ISO 14001 인증기업에 대하여 관세인하 등의 혜택부여 등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1998년이후에는 인증획득기업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세계주요국가별 환경경영체제(ISO 14001) 인증실적

국가명	인증실적	국가명	인증실적
독일	200	스위스	80
오스트리아	60	홍콩	11
스웨덴	51	싱가폴	17
영국	350	말레이시아	32(시범)
프랑스	26	대만	13
노르웨이	120	태국	15
덴마크	42	캐나다	10
핀란드	42	일본	330
벨기에	2	미국	32
스페인	18	중국	4
이탈리아	30	한국	164

주) 통계 1997년 8월 1일 현재(한국은 1997년 10월 31일 현재)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란 기업이 전 생산활동에 걸쳐 자원의 절약과 환경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환경관리체계가 ISO 14001의 규격요건에 적합하게 구축 및 관리되고 있는가를 제3자인 인증기관(CERTIFICATION/REGISTRATION BODY)이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주는 제도로 정의할 수 있다. 기업은 ISO 14001 인증을 통하여 내부적으로는 환경을 고려한 경영체제의 효율화를 기함과 아울러 생산COST, 에너지 및 폐기물 등의 절감 및 법규준수에 대한 대응체제확보 등으로 경쟁력을 향상하고, 외부적으로는 환경문제에 따른 국제무역장벽의 근본적인 제거수단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자원의 절약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감소로 지구환경보전에 공헌을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인간과 환경중심의 산업활동을 모토로 기업의 존재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동기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의 특징으로서 기업이 동 제도에 참여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강제성이 전혀없는 기업의 자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관리개념에서의 환경법규, 즉 환경부에서 운용중인 관련 법규에 따라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의 불법배출의 경우 위반기업에 대하여 해당 법규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고 위반정도가 심한 경우 조업자체를 정지하는 등의 규제를 하는 것과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는 기업이 스스로 자사의 환경요인을 파악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환경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재정적·기술적인 검토를 통하여 투자우선순위를 정한 후 투자를 실시함에 따라 환경에 친화적인 기업경영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환경경영체제 인증을 획득한 기업이 환경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단순히 위반유무에 의하여 인증의 유효성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며, 여기에는 여러가지 사항에 대한 고려 및 검토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 환경법규 위반의 원인, 주체, 형태, 빈도, 심각성, 관리절차, 시정조치내용 및 예방조치의 가능여부나 실시여부 등이 그러한 고려 및

검토사항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환경법규의 위반이 발생한 인증기업의 환경경영체제가 ISO 14001 요건에 적합하게 관리상태하에 있다면(원인분석, 시정 및 예방조치, 위반된 사항에 대한 환경측면의 파악,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의 설정, 환경경영프로그램의 수립 및 지속적인 개선 활동의 실시 등이 적합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경우), 인증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며, 반드시 인증을 취소하여 해당 기업을 처분하는 것은 "관련 법률이나 규정을 준수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달성한다는 환경방침이외에는 환경성과에 대한 절대적인 요건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는 ISO 14001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1996년 10월 1일부터 환경경영체제의 국제표준화에 맞춰 동 인증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는 중이며, 통상산업부 및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KAB)는 지난 1997년 9월 22일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을 개정·고시하여 인증의 신뢰성,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였고,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를 시행한지 1년여 되는 시점에서 인증제도를 실질적으로 끌어가는 인증기관 및 인증심사원을 양성하여 배출하는 연수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환경경영체제의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인증제도를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의 활성화 및 조기 정착을 위하여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에 대한 계몽 및 정보자료를 보급하고,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인증획득 희망업체에 대한 기술지도 및 비용의 지원을 실시하며, 세금감면이나 공공건설공사 입찰시의 PQ가산점 부여 제도 등 정부차원에서 인증획득을 적극 권장·지원하고 있다.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KAB)에서는 환경경영체제를 보다 효과적이고 근본적으로 구축 및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경영 관련 각종 지원기법을 연구·개발 및 보급하기 위하여 LCA센터를 설립하여 전과정평가(LCA)기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환경성과평가(EPE) 등에 대한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향후 이러한 지원기법들이 개발되어 본격적으로 보급되면 기업의 환경경영체제 구축 및 유지가 보다 기술적이고 현실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가적으로 환경기술개발 및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관련 산업발전을 한단계 높여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환경경영체제 인증과 지속적인 개발능력의 확보를 통한 기업환경이미지를 이해관계자에게 손쉽게 제고 시킬 수 있어 환경시대에 적합한 대외 마켓팅 활동과 환경기술장벽 극복이 가능할 것이다.

아무튼 현재의 기업경영에 있어서 환경경영체제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의 입장을 피력하지는 못할 것이다. 다만, 환경경영체제의 성공적인 도입과 운영은 기업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에 의해서 그 결과는 얼마든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환경경영체제의 구축을 위한 최고경영자의 결의와 이를 위한 지도력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러한 결의와 지도력에 근거하여, 환경경영체제가 향후 대외경쟁력의 실질적인 기술장벽으로 대두될 수 있으며, 경영활동 전반을 환경적합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술적, 경제적인 난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전임직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성공적인 환경경영체제를 운영해 나갈 수 있음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다.

앞으로 환경경영체제를 구축한 기업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환경보전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결과 환경적합형 상품의 생산, 청정기술의 개발 및 환경이 우선되는 산업발전 등의 실질적인 모습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